

2019. 10.5.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②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③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법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④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해설 →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④ (X) 1884년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해설 →

- ③ (X)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무종합 핵심정리 12p>

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① 실정법상·조직법상 개념 ②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 →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유동적 개념 ③ 사법경찰, 경찰의 서비스 활동 등	① 학문상(실무상×) 정립된 개념 -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 ②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 ③ 행정경찰, 예방경찰, 자치경찰 등
양자의 관계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②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은 경찰상 즉시강제(불심검문의 성격에 관해 학설의 다툼이 있음)의 권력작용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정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기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

-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② (X)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0조 제2항).
- ③ 동법 제10조 제3항
- ④ 동법 제10조 제4항

해설 → 바 (X)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서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 ②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④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해설 → ① (X)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실무종합 핵심정리 45p>

구분	훈령	직무명령
차 이 점	개념 ①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 ③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를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음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효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유효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위반의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경합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 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핵심정리] 경찰책임의 원칙 <실무종합 핵심정리 85p>

의의	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에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② 예외적으로 경찰긴급상태 때에는 비장해자(비책임자)에 대하여도 경찰책임이 인정됨 ③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음 ④ 모든 자연인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 국적 여부, 정당한 권원의 유무 등은 문제되지 않음	
유형	행위 책임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경찰상의 책임
	상태 책임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는 질서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책임을 짐(고의·과실 불문)
	복합적 책임	①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가능 ②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 위험방지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찰위반 상태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함이 원칙(일반적으로 행위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함이 적절한 경우 많음)
예외	① 경찰권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비장해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함 ② 경찰긴급권은 예외적인 것으로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함 ③ 경찰긴급권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며 「소방기본법」(제24조),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9호), 「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 제3호)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④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함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나.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 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구호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가.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나. (X)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4조 제5항),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 제6항).

- 다. (O) 동법 제4조 제3항
- 라. (O) 동법 제4조 제7항
- 마. (O)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나) 항목이 옳지 않다.

1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두 몇 개인가?

가.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라.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가.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나. (X)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조 제2항).

다. (X)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동규정 제6조).

- 라. (O) 동규정 제7조
- 마. (O) 동규정 제8조 제1항
- 바. (O) 동규정 제9조
- (나, 다) 2 항목이 옳지 않다.

- ② “경찰장구”란 무기,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해설 →

- ①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 ② (X)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③ (O) 동법 제10조 제5항
- ④ (O) 동법 제10조 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집행
- ② 집행벌
- ③ 과징금
- ④ 강제징수

해설 →

- ③ (X) 과징금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해당한다.

[핵심정리]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실무종합 핵심정리 89p>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강제	즉시강제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경찰벌	경찰형벌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질서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① 금전상 제재(과징금, 가산금) ② 경찰상공표(명단공개)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④ 취업제한 ⑤ 공급 거부 ⑥ 관허사업의 제한 ⑦ 국외여행의 제한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 ②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해설** → ① (X)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3호 참고).
- ② (O) 동법 제60조 제1항
 - ③ (O) 동법 제58조
 - ④ (O) 동법 제57조

- 해설** → 가.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나. (O) 동법 제15조 제4항 제1호
 다. (O) 동법 제15조 제4항 제2호
 라. (O) 동법 제15조 제4항 제3호
 마. (X)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 제4항 제4호).
 바. (X)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제5호).
 (마, 바) 2 항목이 옳지 않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17 경찰통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 ② 경찰청의 감사관,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제정권은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X)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② (X) 청문감사관제도도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③ (X)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므로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④ (O)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한 통제 사례로 외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1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원리와 그에 대한 적용을 연결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적 감시 - 조경·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출입구의 최소화,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③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의 설치
- ④ 활동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 해설** → 가. (O)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나. (O)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다. (X)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라. (X)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에 혼잡경비업무라는 용어도 없다.
 (가, 나) 2 항목이 옳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계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나.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다.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발생시 현장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마.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해설** → 가. (X)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전파 업무는 상황근무에 해당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
 나. (X)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 제2항).
 다. (O) 동규칙 제5조 제3항 제4호, 제8조 제2항 제3호
 라. (X)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 마. (X)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1호).
- (가, 나, 라, 마) 4 항목이 옳지 않다.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데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
-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해설 → ②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가.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다면, 손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
- 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마.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바.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경우,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가. (X)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7.15. 2009도4545)

나. (O) 대법원 1997. 9.30. 97도1873

다. (X)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2008도2160)

라. (O) 대법원 1999. 7.13. 99도2151

마. (X)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가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7.29. 2005도3801)

바. (O) 대법원 2008. 8.21. 2008도3975

(나, 라, 바) 3 항목이 옳다.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갈죄	나. 퇴거불응죄
다. 주거·신체 수색죄	라. 중손괴죄
마. 재물손괴죄	바. 중감금죄
사. 약취·유인죄	아. 특수감금죄
자. 아동학사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나, 라, 사) 3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해설** → ① (X)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 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1항).
- ② (O) 동법 제26조 제2항
- ③ (X)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 ④ (X)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제3항 제1호).

25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등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한다.
- ②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도 ‘컴퓨터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 ③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조작’이라 한다.
- ④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산출조작’이라 한다.

- 해설** → ④ (X)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투입조작’이라 한다. ‘산출조작’은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27 재난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 재난관리 규칙」상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은 생활안전기능에서 수행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해설

- ① (O)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 ② (O) 경찰 재난관리 규칙 [별표 2] 현장지휘본부
- ③ (X)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제3조 제1호).
- ④ (O)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

28 경찰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부대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 ② 외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있다.
- ③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해설

- ③ (X)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29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 한다.
- 나. 대통령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의 다음날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 다.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 라. 개표소 경비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한다.
- 마.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점검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위반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 - 공동위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 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취소 또는 제1종 적성기준 불합격으로 제2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된 날부터 1년 ※ 취소된 날부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처분 기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후 취득 	

※ 단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판결 확정,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

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③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해설 → ②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p>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p> <p>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3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 나.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음주측정용 불대는 1인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 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바.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 | | |
|------|------|
| ① 2개 | ② 3개 |
| ③ 4개 | ④ 5개 |

해설 →

- 가. (O)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나. (O)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운기나 트랙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 (X) 음주측정용 불대는 1회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 제3항).
- 라. (X)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 마. (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호
- 바. (O) 대법원 2001.8.24. 2000도 6026
(다, 라) 2 항목이 옳지 않다.

34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③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행위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④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할 수 없다.

해설 →

- ① (O) 대법원 1993.2.23. 92도2077
- ② (O) 대법원 1990.2.27. 89도777
- ③ (X)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2.4.12. 2011도9821).
- ④ (O) 대법원 2011.8.25. 2011도7725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해설 →

- ① (O)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② (O) 동법 제9조 제1항
- ③ (X)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5조). 따라서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제14조)은 적용된다.
- ④ (O) 동법 시행령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제2호

- 해설** → ① (X) 출동조치와 병행하여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③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④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 해설** → ① (O)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9호
 ② (O) 동법 제46조 제1항 제10호
 ③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동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④ (O) 동법 제46조 제1항 제12의2호

[핵심정리] 강제퇴거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제2항 참고)

<p>〈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2. 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입국심사 또는 선박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 5.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상륙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 고용제한,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람 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11.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p>〈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박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